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54
----------	-------

발의연월일 : 2026. 6. 10.

발 의 자 : 박홍배 · 이정현 · 박정현
민병덕 · 안도걸 · 김우영
이수진 · 김영호 · 김문수
박해철 · 김남근 · 한준호
김영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개시일 이전에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갈등으로 조기 이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구인자 입장에서는 채용공고 단계에서 사업 운영 현황, 인사계획, 직무배치, 임금 등의 변동 가능성을 배제한 채 근로조건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기업 내부의 보상정책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에 부담을 가질 수 있음.

이에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린 경우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구직자에게 직무·임금의 예정 내용, 취업규칙의 주요 사항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권익 보장과 공정한 근로계약 협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채용 여부의 고지)”를“(채용 여부 및 근로조건 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인자는 제1항에 따라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구직자에게 직무·임금의 예정 내용, 취업규칙의 주요 사항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대상자 근로조건 등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생략)</p> <p><신 설></p>	<p>제10조(채용 여부 및 근로조건에 고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구인자는 제1항에 따라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구직자에게 직무·임금의 예정 내용, 취업규칙의 주요 사항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p>